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434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9 . 25 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호적법시행규칙개정(대법원규칙1411호)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 내용을 개정.보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기준 전면 개정

해·태 기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7일미만	10,000원	20,000원
7일이상 1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40,000원	80,000원
6월이상	50,000원	100,000원

3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‘별표2’와 ‘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3호서식’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대 비 표

[별표 2]

(현 행)

과태료 부과기준 (제4조 제1항 관련)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1월 미만	10,000원	2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6월 이상	50,000원	100,000원

(개정안)

과태료 부과기준 (제4조 제1항 관련)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7일 미만	10,000원	20,000원
7일이상 1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40,000원	80,000원
6월 이상	50,000원	100,000원

(현행)

해 태 이 유 서

1. 신고(또는 신청) 의무자

성명 : (남.여) 주민등록번호 :
본적 :
주소 :

2. 사건본인의 인적사항

성명 : (남.여) 주민등록번호 :
신고(또는 신청) 의무자와의 관계

3. 사건발생상황

사건의 표시 :
사건발생년월일 : 년 월 일
사건신고년월일 : 년 월 일

해태기간 (1월미만, 1월이상 3월미만, 3월이상 6월미만, 6월이상)

년 월 일
진술인 인

○ ○ 읍·면장 귀하

(개정안)

해 태 이 유 서

1. 신고(또는 신청) 의무자

성명 : (남.여) 주민등록번호 :
본적 :
주소 :

2. 사건본인의 인적사항

성명 : (남.여) 주민등록번호 :
신고(또는 신청) 의무자와의 관계

3. 사건발생상황

사건의 표시 :
사건발생년월일 : 년 월 일
사건신고년월일 : 년 월 일

해태기간 (7일미만, 7일이상 1월미만, 1월이상 3월미만, 3월이상 6월미만, 6월이상)

년 월 일
진술인 인

○ ○ 읍·면장 귀하

(현행)

과태료결정자료부

신고 또는 신청의무자		① 위반조항	② 과태료액	③ 해 태 기 간				비 고
주 소	성 명			1월미만	1월이상~ 3월미만	3월이상~ 6월미만	6월이상	

※ 작성요령

1.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와 별표 1의 근거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
2. 과태료액은 조례 제7조에 의한 산정금액 기입
3. 해태기간은 1월미만, 1월이상~3월미만, 3월이상~6월미만, 6월이상 구분

(개정안)

과태료결정자료부

신고 또는 신청의무자		① 위반조항	② 과태료액	③ 해 태 기 간					비 고
주 소	성 명			7일미만	7일이상 1월미만	1월이상~ 3월미만	3월이상 6월미만	6월이상	

※ 작성요령

1.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와 별표 1의 근거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
2. 과태료액은 조례 제7조에 의한 산정금액 기입
3. 해태기간은 7일미만, 7일이상 1월미만, 1월이상~3월미만, 3월이상~6월미만, 6월이상 구분